

청원서

수신 : 국회의장

제목 :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의 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 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끝.

청원자(대표)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전화 : 2635 - 1133, 675 - 9744)

성명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 인

소개의원(대표)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성명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건명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의 제정에 관한 청원
소개 연월일	1999년 10월 14일

소개의견

1) IMF 이전에도 한국의 노동자들은 세계최고수준의 장시간노동, 산업재해왕국, 빈약한 사회보장(GDP 4.4% 수준, 퇴직금 포함)의 악순환에 갇혀왔으며, 98년 이후에는 대량실업문제가 겹치면서 한국노동자들은 열악한 '삶의질'과 '대량실업'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 정부는 구조조정을 빌미로 재벌들의 과다부채를 해결하는데 막대한 국민세금을 쏟아붓고 있으며, 기업들은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을 통해 과다부채와 부실경영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 등 노동배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제위기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대량실업, 임금삭감 등으로 고통을 전담하고 있는 등 노동자들의 삶의질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3)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이대로'를 외치는 집단과 '이제 그만'을 절규하는 층으로 급속도로 양극화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4) 민주노총이 노동시간단축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는 이유는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고, 우선 절박한 한국사회의 '삶의질'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처럼 8,000억엔을 쿠폰으로 나눠주는 방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보다 더 확실한 내수진작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경기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더욱이 '대량실업'을 억제함으로써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도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5) 국제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왔으며, 이에 따라 1935년에 체결된 ILO조약 제47호는 각국이 주40시간 노동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시간단축시 생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경제대국이지만 생활빈국인 것을 부끄러워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국정지표로 내걸고 90년대초부터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노사정이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97년 현재 연간 1900시간대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바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리고 70년대 이후 주로 저성장 고실업구조, 대량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노동시간단축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프랑스에서는 대량실업에 대한 극복대안으로서 주35시간제(오브리법)를 도입하여 전사회적인 일자리나누기를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6) 본 의원은 이 청원안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체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1천3백만 노동자와 그 가족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대량실업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이를 소개합니다.

소개의원 :

인

청원서

피청원인 : 대한민국 국회의장

제 목 :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세계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 그리고 대량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해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을 첨부와 같이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의 이유

98년말 현재 한국의 전산업 노동시간 평균은 주 45.9시간으로 연간 노동시간은 2,390시간에 달하며,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초과근로의 축소, 조업단축에 의해 노동시간이 많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이는 연간 노동시간이 1,500~1,600시간대인 유럽은 물론 선진국중 가장 노동시간이 긴 일본의 1,900시간에 비해서도 훨씬 긴 수준이며, 대부분 주당 노동시간이 30시간대인 OECD 가입국중에서도 노동시간이 가장 길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을 포함 하더라도 세계 최장수준의 노동시간(세계8위)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중대재해율(3.37)은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특히 사망률은 영국(0.12)의 30배, 일본의 8배(0.45), 싱가포르의 3배(1.02)나 됩니다. 노동시간이 산재에 미치는 영향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마지막 노동시간대에 산재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사례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과 같은 장시간 노동국가에서는 산재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매년 전쟁을 치른 것 이상의 사망자와 신체장애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사회적으로 초과근로의 제한 등 실노동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노동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전쟁같은 노동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99년 8월 현재 정부통계상 실업률은 5.7%(124만1천명)이지만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 3.5%(74만1천명)와 18시간미만의 불완전취업층, 반실업상태의 일용노동자층을 포함하면 OECD기준 200만, 실제 실업자는 3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기실업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실업자 구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대우쇼크와 같은 경제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대량실업사태를 극복하고 연착륙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대량실업사태로 인해 현저하게 노동자의 빈곤화, 사회적 소득의 불평등 심화, 근로조건 악화 등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갈수록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이야말로 사회통합과 21세기형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하여 세계최장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 그리고 대량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안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1999. 10.

청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대영빌딩 5층)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1. 법제정 골자

1) 전사회적으로 삶의 질향상을 위한 ‘노동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하고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추진하기 위해 ‘20인 이내의 노사정동수로 구성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함(제5조)

2) 산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산업별 노동시간단축협약을 체결토록 함. 아울러 사업장단위의 노동시간단축 추진체제를 갖추도록 함.(제6조)

3) 구조조정, 경기침체 등으로 대량의 인원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의무화함(제7조)

4)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초과근로시간을 주당 7시간으로 제한함.(제8조)

5) 국제적 기준에 따라 생활수준의 저하없는 실노동시간의 단축에 관한 기본 원칙을 명시함(제9조)

6)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통해 생활수준의 저하없는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보전기금을 조성토록 함. 소득보전기금의 관리 운영은 노동시간단축위원회가 하며, 그 기금의 조성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통해 그 중의 일부를 목적세로 환수토록 하되 조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0조)

7) 노동시간단축지원센터의 설립(제11조)

2. 청원의 내용

노동시간단축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 목적 】 이 법은 ‘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노동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하고, 노사간 자율적인 산업별 노동시간단축협약의 체결 촉진,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근무교대제의 개편을 통한 노동시간의 단축, 초과근로시간의 제한, 휴일휴가의 확대, 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른 소득보전 등 실노동시간단축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질을 향상하고, 산업구조조정, 경기순환, 기업의 경영악화 등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및 적극적인 고용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 법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3조 【 사용자의 책무 】 사용자는 종업원의 삶의질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노사동수의 노동시간단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자리나누기, 근무교대제의 개편, 초과근로시간의 단축, 휴일휴가의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산업별노동시간단축위원회가 체결한 산업별 노동시간단축협약 및 산업별노동시간단축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 노동시간의 단축은 생활수준의 저하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 국가의 책무 】 국가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사회적 노동시간단축계획’을 수립, 공표, 시행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사용자, 노동자 등의 노동시간단축추진계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2 장 노동시간단축위원회

제5조 【 노동시간단축위원회의 구성 】 ① 국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기구로 20인이내의 노.사.정 동수가 참여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회적 노동시간단축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동시간단축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협약체결 촉진에 관한 사항
3.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및 고용창출 목표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의 확대에 관한 사항
5. 근무교대제의 변경을 통한 노동시간단축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6. 초과근로의 제한에 관한 사항
7.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보전기금에 관한 사항
8. 고용보험을 통한 노동시간단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시 세제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노동시간단축지원센터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나누기에 관한 중요사항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1항 각호의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노동부장관 등 관

계부처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 장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 및 협약체결 촉진

제6조 【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의 구성 】 ① 노동자와 사용자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하나의 산업 또는 업종별로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하는 20인이내의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산업별 노동시간단축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호의 노동시간단축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의 목표 및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 사업장별 노동시간단축의 촉진 및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3.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및 고용창출 목표에 관한 사항
4. 산업별 휴일휴가의 확대에 관한 사항
5. 산업별 근무교대제의 변경을 통한 노동시간단축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6. 산업별 초과근로의 제한에 관한 사항
7. 산업별 고용안정기금 조성을 통한 생활수준의 저하없는 노동시간 단축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고용보험을 통한 노동시간단축의 지원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
9. 기타 산업별 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나누기에 관한 중요사항

② 사용자는 1항의 산업별 노동시간단축 협약 및 노동시간단축 추진계획을 이행하고 사업장 단위의 노동시간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대표가 노사동수로 참여하는 노동시간단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는 1항 각호의 산업별노동시간단축계획을 ‘노동시간단축위원회’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 노동시간단축위원회는 산업별 계획을 심사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4 장 실노동시간단축 촉진 및 지원

제7조 【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노동시간단축 촉진 및 지원 】 ① 국가는 산업구조조정, 경기순환 등에 따른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노동시간단축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시행하여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필요한 시간외근로 등 근로시간의 단축, 휴일휴가의 확대, 근무교대제의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가 일자리나누기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는 노동자의 소득보전, 사용자의 세금감면 등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일자리나누기를 하는 동안 임시직을 통한 정규직 대체를 해서는 안된다.

제8조 【 초과근로의 제한 】 초과근로는 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 생활수준의 저하 없는 실노동시간단축의 추진 】 국가는 ‘사회적노동시간단축계획’을 수립, 이행함에 있어 생활수준의 저하없이 노동시간단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 소득보전기금의 설치 】 ① 국가는 ‘사회적노동시간단축계획’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생활수준의 저하없는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보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득보전기금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중 일부를 소득보전기금으로 조성하며, 이 기금의 조성방법, 용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득보전기금은 노동시간단축위원회가 관리운영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 노동시간단축 지원센터 운영 】 국가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간단축위원회’ 산하에 노동시간단축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한다. 노동시간단축 지원센터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 제정의 이유

1) 세계최장 수준의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98년말 현재 한국의 전산업 노동시간 평균은 주 45.9시간으로 연간 노동시간은 2,390시간에 달하며, 이는 98년 IMF사태와 경기침체에 따른 초과근로의 축소, 조업단축로 인해 노동시간이 많이 줄어든 결과임. 그럼에도 이는 연간 실노동시간이 1,500~1,600시간대인 유럽은 물론 선진국중 가장 노동시간이 긴 일본의 1,900시간에 비해서도 훨씬 긴 수준임. 대부분 주당 노동시간이 30시간대인 OECD 가입국중에서도 노동시간이 가장 길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더라도 세계 최장수준의 노동시간(세계8위)을 기록하고 있음.

[표 1] 연간 노동시간의 국제비교

(단위 : 시간)

		1973	1979	1983	1990	1993	1994	1995	1996	1997
피용자	캐나다	1,814	1,757	1,708	1,718	1,704	1,720	1,726	1,721	
	체코							1,984	1,990	1,981
	핀란드				1,668	1,635	1,674	1,673	1,692	1,687
	프랑스	1,771	1,667	1,558	1,539	1,521	1,520	1,523	1,547	1,539
	서독	1,804	1,699	1,686	1,557	1,527	1,527	1,506	1,502	1,503
	아일랜드				1,843	1,790	1,774	1,776	1,799	1,790
	이탈리아	1,842	1,748	1,724	1,694	1,687	1,682			
	일본				2,064	1,920	1,910	1,910	1,919	1,891
	멕시코					1,921		1,933	2,006	1,955
	네덜란드	1,724	1,591	1,530	1,433	1,404	1,395	1,397		
	스페인		1,936	1,837	1,762	1,748	1,746	1,749	1,747	1,745
	미국	1,896	1,884	1,866	1,936	1,939	1,947	1,953	1,951	1,967
한국			2,736	2,512	2,475	2,470	2,486	2,465	2,434	

자료: OECD(1998)

2) '산업재해 왕국'이라는 불명예 극복

현재 한국의 중대재해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음. 특히 사망률은 영국의 30배, 일본의 8배, 싱가포르의 3배나 됨. 노동시간이 산재에 미치는 영향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마지막 노동시간대에 산재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사례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음. 한국과 같은 장시간노동국가에서는 산재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매년 전쟁을 치른 것 이상의 사망자와 신체장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임.

[표2] 사망등 중대재해 추이 (단위: 명)

연도	91	92	93	94	95	96	97
근로자	7,922,704	7,058,704	6,942,527	7,273,132	7,893,727	8,156,894	8,236,641
재해자	128,169	107,435	90,288	85,943	78,034	71,548	66,770
재해율(%)	1.62	1.52	1.30	1.18	0.99	0.88	0.81
신체장해자	28,629	32,006	28,088	27,617	23,586	27,394	28,854
재해접유율(%)	22.3	29.7	31.1	32.1	30.2	38.2	43.2
사망자	2,299	2,429	2,210	2,678	2,662	2,670	2,742

자료: 노동부

[표3] 각국별 산재사망률 비교표 (단위: %)

	한국	싱가폴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재해율(%)	3.37	1.02	1.43	0.74	0.45	0.12

자료: 노동부

$$\text{사망률(만인률)} = \text{사망자수} / \text{근로자수} \times 1000$$

3) 노동시간단축 촉진을 통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고용창출

- 99년 8월 현재 정부통계상 실업률은 5.7%(124만1천명)이지만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 3.5%(74만1천명)와 18시간미만의 불완전취업층, 반실업상태의 일용노동자층을 포함하면 전체 실업자는 3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됨. 더욱이 장기실업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실업자 구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대우쇼크와 같은 경제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대량실업사태를 극복하고 연착륙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임.

- 또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과 이로 인한 대량실업은 노동자의 빈곤화, 사회적 소득의 불평등 심화, 근로조건 악화 등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등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에 기초한 사회통합적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해야 함.

[표 4] 실업자와 실업률의 연도별 추이(정부통계)

연도	96	97	98	99.1/4	2/4	99.8
실업자(천명)	424	556	146	175	144	124
실업률(%)	2.0	2.6	6.8	8.4	6.7	5.7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호

[표 5] 실업률의 국제비교 (97년, 단위:%)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5.7	3.4	2.6	8.5	4.9	5.6	11.5	12.5	9.2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98.4 * 한국은 99년 8월 통계임

4) 전사회적인 실근로시간단축 촉진

- 실근로시간을 단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장시간노동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정노동시간의 단축과 함께

①기준노동시간의 단축 ②기본급비중의 확대(월급제) ③연장노동시간의 제한 ④ 휴일휴가 확대 ⑤영업시간의 제한, ⑥유급휴일, 휴가의 확대 및 완전취득 ⑦근무 교대제의 변경, 노동시간 단축지원센터의 설립 등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중층적으로 강구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단축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임.

* 일본에서는 경제대국이면서도 생활빈국,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87년부터 당시 주당 41.3시간(연간 2192시간)의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주35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목표로 정한 바 있음. 이를 위해 ①노동기준법을 개정하여 주40시간노동제를 도입하고 ② 노동시간 단축 촉진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노동시간단축위원회 등을 구성하였으며 ③ 시간외, 휴일노동의 법정할증율을 인상하고 연장근로를 제한하며 ④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토록 하고 ⑤ 학교수업을 주5일제로 확대해 나가는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고, 노사는 근무교대제를 변경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94년에는 주 37.6시간(연 196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했음.

[표 7] 연간휴일, 휴가일수의 비교

	공휴일	주휴일	유급휴가일	연간총휴가,휴일
한국	17	52	22	91
일본	17	90	10	117
미국	10	104	14	128
독일	13	104	30	147
영국	8	104	27	139
프랑스	14	104	25	143
이태리	12	104	30	146
스웨덴	17	104	25	146
덴마크	11	104	25	140
싱가포르	11	52	7	70

주: 일본의 경우 1개월당 토요일 3일 휴무로 계산. 윤진호(1998)에서 인용

5) 초과노동시간 제한없이 장시간노동구조는 개선되기 어려움.

- 현재 한국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나치게 긴 초과노동시간 때문임.

- 반면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총임금에서 차지하는 초과근로수당의 비율이 높으므로 초과노동시간의 축소는 총임금의 상당한 저하를 가져와 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됨. 따라서 초과노동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저하에 상응하는 사

회적 지원책이 필요함.

- 아래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초과노동시간에 대해 일간 규제, 주간 규제, 월간 규제, 연간 규제 등 다양한 초과노동시간 상한 규제를 두고 있음.

한국의 경우 97년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해 하루 12시간, 일주일 56시간의 총노동시간 상한선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첫째, 하루 노동시간 상한선(12시간)이 너무 높음. 대부분의 유럽국에서 하루 노동시간 상한선은 9-10시간임. 둘째, 주당 56시간 상한선도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므로 이를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초과노동 자체가 거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유럽 국가들은 초과노동과 관련한 연간상한선 규제를 하고 있는데 비하여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연간 최고 624시간(12시간*52주)의 초과노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바로 이러한 연간상한선 규제의 부재가 한국의 연간노동시간을 엄청나게 길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고 있음. 넷째, 초과노동의 연속에 대한 규제가 없음. 다른나라의 경우, 계속되는 초과노동은 특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연속 초과노동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

-초과노동 상한제와 더불어 초과노동을 단축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으로서 초과수당의 할증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이미 한국의 초과근로 할증률이 국제수준에 비추어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상태이므로 그보다는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보상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참고로 한국과 유사한 노동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IMF-JC는 1994년 연간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인다는 「시간단축 5개년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완전주휴 2일제 실시, 경축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대체휴일의 설정, 근속 1년 이상의 연휴가부여일수 최저 20일, 초과노동시간을 개인은 월 30시간 이내, 전체 평균 연간 120시간 이내로 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임.

[표 8] OECD 회원국에서의 노동시간에 관한 규제(1998년 현재)

국가	법적 상한선					단체협약상의 정규근로시간
	정규주당 노동시간	하루노동 시간	주당 초과근로시 간	주당 총근로 시간	연간초과 근로시간	
오스트레일리아	38-40	--	규제없음	규제없음	--	35-40
오스트리아	40	9 혹은 10	5 (1년중 12주는 10시간 허용)	48 혹은 50	--	36-40
벨기에	40	11	10	50	--	38
캐나다	40-48	--	규제없음	규제없음	--	35-40
체코	42.5	9.5-12	8	51	120	
덴마크	37	노동자 동 의 필요	규제없음(노동 자 동의 필요)	48	--	37
핀란드	40	9	5	45	--	37.5-40
프랑스	39	10	9	48(44)	1 2 주 간 96	39
독일	48	10	12	60	--	35-39
그리스	40	--	8	48	--	40
헝가리	40	12	12(통상 8시간)	52	--	
아일랜드	48	--	12	56	--	38-40
이태리	48	--	12	60	96	36-40
일본	40	--	규제없음	규제없음	--	40-44
한국	44	12	12	56	--	
룩셈부르크	40	10	8	48	--	40
멕시코	48	--	9	57	--	
네덜란드	45	10(9)	15	4주평균 주 당 50시간 혹 은 13주평균 주당 45시간	--	36-40
뉴질랜드	40	--	규제없음	규제없음	--	40
노르웨이	40	9	10	48	--	37.5
포르투갈	40	초과 2시 간	12	50	--	35-44
스페인	40	9	2	45	80	38-40
스웨덴	40	규제없음	12	48 혹은 52	200	40
스위스	45(50)	--	16	61 혹은 66	--	40-42
터키	45	9	--	45	270	
영국	규제없음	--	규제없음	규제없음	--	34-40
미국	40	--	규제없음	규제없음	--	35-40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June 1998. 윤진호(1998)에서 재인용

6) 기본급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임금보전 등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 조치없이 실노동시간단축을 촉진하기 어려움.

- 노동시간 단축시 가장 큰 쟁점은 임금보전문제임.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들은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반대하면서도, 실노동시간이 단축된 만큼 임금을 삭감한다든지, 노동강도를 높이려 하고 있으며, 이것은 현재의 과다부채 및 그에 따른 금융비용을 인건비를 줄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와 함께 경기가 좀 나아지면

또다시 장시간노동체제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노동시간단축은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노동시간 단축은 의미가 없음.

- 더구나 한국의 임금체계는 기본급비중이 너무 낮아서 연장근로를 통해 보충하지 않으면 생활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렇다고 사회보장제도(세계 122위 수준)가 잘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임금삭감없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대한 국제적 기준(ILO조약 제47호) 또한 생활수준의 저하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시간급을 월급제로 전환하여 기본급 수준을 통상임금수준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기업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량실업상황, 최저의 사회보장수준, 지불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기업들의 조건 등을 감안할 때, 노동시간 단축시 임금삭감분에 대한 사회적 보전방안 없이는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이 추진되기 어려움.

-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소득보전을 노사정이 분담하는 방식은 이미 서구에서도 시행된 바 있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소득보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했음. 이를 위해 국가가 그 차액분을 사회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고용세나 기금을 조성해야 함.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등을 통해 최소한 20조 이상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기금을 조성토록 요구한 바 있음.

[표 9]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금 액수(프랑스)

(단위: 1인당 프랑/연간)

	실시시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근로시간 10% 단축, 고용창출/유지 6%	1998.6-1999.6	9,000	8,000	7,000	6,000	5,000
	1999년 하반기	7,000	6,000	5,000	4,000	3,000
근로시간 15% 단축, 고용창출/유지 9%	1998.6-1999.6	13,000	12,000	11,000	10,000	9,000
	1999년 하반기	11,000	10,000	9,000	8,000	7,000

자료: 인터넷 유럽근로조건개선재단 홈페이지(<http://www.eiro.eurofound.ie/>). 윤진호(1998)에서 재인용

7)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노동시간단축협약 등이 뒷받

침되어야 함.

-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산업별, 기업별 노동시간단축 협약을 통해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뒷받침해 나가야만 함.

- 이 경우 효율적으로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른 산업별협약을 통해 사업장 단위까지 실근로시간의 단축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즉 산업, 기업별 특성에 따라 주5일근무제, 근무교대제 변경(예를 들면, 3조3교대를 4조3교대로 개편) 등 다양한 형태로 산업별, 기업별 노동시간단축 협약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독일의 자동차회사인 폭스바겐사는 1993년까지 지속적인 판매부진으로 100만대 이상의 재고가 누적되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만 8천명을 감원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적이 있었음. 그러나 1994년 단체협약에서 고용보장을 전제로 노동시간은 주 5일 38.8시간에서 주 4일 28.4시간으로 26% 단축하되, 임금은 10%정도 삭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2년간 3만명의 감원에 해당하는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음.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1999.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